

충남대학교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지침

제정 2022. 11. 14.
1차 개정 2023. 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 융합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합전공”이라 함은 융합적 교육을 위해 본교의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여 별도로 설치한 대학원 과정의 전공을 말한다.
2. “참여학과”라 함은 해당 융합전공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주관학과”라 함은 융합전공 참여학과 중 해당 융합전공의 제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학과를 말한다.
4. “주관 대학”이라 함은 주관학과가 소속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융합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는 참여학과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융합전공은 별도의 모집단위가 아닌 전공으로서 입학정원이 배정되지 아니하며,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의 원 소속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공운영) ① 융합전공의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융합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융합전공주임교수는 주관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계열학사위원장(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② 융합전공별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융합전공주임교수가 된다.

③ 융합전공명, 참여학과 등 융합전공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참여학과에 소속된 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첫째 학기부터 융합전공 이수신청이 가능하며,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재 이수 중인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수유형)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유형1: 융합전공만을 이수
2. 유형2: 원 소속 전공을 이수하면서 융합전공 추가 이수

② 융합전공 이수자는 원 소속 학과의 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7조(이수기준) ① 융합전공 유형1 이수자의 경우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융합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원 소속 전공의 이수학점을 융합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융합전공 유형2 이수자의 경우 원 소속 학과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되기 전에 이수한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융합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수강학점) 융합전공 유형2 이수자의 경우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수강학점 이외에 학기당 6학점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제9조(선발절차) ① 융합전공의 학위과정별 선발 여부 및 인원, 선발기준 등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합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②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학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대학장)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융합전공 이수자의 선발은 주관학과에서 융합전공운영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학기별 1회에 한하며,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단, 국책사업 수행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학기 중에 융합전공 이수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선발된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수강신청(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이 첫째 학기부터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 지도를 통하여 제2항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되, 참여학과의 전공교과목이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교과목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이수포기 및 유형 변경) ①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학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대학장)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융합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이 원 소속 학과 전공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공교과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전공의 교과목으로 인정된다.

②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융합전공 이수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학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대학장)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장은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처리한 후 재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융합전공 이수포기 및 유형 변경의 신청은 이수기간 중 각 2회에 한한다.

제12조(학적변동에 따른 처리) ① 융합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될 경우에는 주관학과에서 융합전공 신청내역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에는 원 소속 학과로만 소속되고, 다시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학위수여) ① 융합전공 유형1을 이수한 학생이 「충남대학교 학칙」 제85조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6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융합전공 이수를 표기하여 원 소속 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 유형2를 이수한 학생이 「충남대학교 학칙」 제85조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6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 소속 전공과 융합전공 이수를 모두 표기하고 원 소속 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융합전공 설치 현황 (개정 2023. 2. 28.)

연번	융합전공명	계열	주관학과*	참여학과	학위종별	설치 시기
1	무인이동체융합전공 (Unmanned Autonomous Vehicle)	공학 계열	항공우주 공학과	항공우주 공학과, 자율운항 시스템공 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2023학년도

* 주관학과(융합전공 참여학과 중 해당 융합전공의 제반 행정 업무 관장)

대학원 융합전공 신설 계획서

① 전공개요

가. 대학원 융합전공 개요

대학원 융합전공명(국·영문)	계열	학위종별 (국/영문)
(국문)		(국문) OO석사 / OO박사
(영문)		(영문) Master of OOOOO / Doctor of OOOOO

나. 참여학과 구성

구성	대학원구분	대학원 학과(전공)명
주관학과	(OO)대학원	
참여학과		
참여학과		

다. 목적

- 교육비전 및 목표, 인재상
-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

라. 교수진

소속 학과·전공	직위	성명	비고

② 전공 운영방법

가. 신설시기 :

나. 인원선발

- 선발정원 :
- 선발방법 및 기준 :
- 지원자격 :

다. 교육과정

- 총 이수 학점

구분	전공	수료학점
석사		
박사		
석·박 통합		

- 교육과정표 및 교과목
 - 기존 학과 개설 교과목 및 융합전공 자체 신설 교과목 등

라. 이수방법

- 주전공과 융합전공 중복교과목 이수 시 인정기준, 이수 포기 신청절차 및 학점인정 기준 등(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기준 범위 내)

마. 학위취득요건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기준 범위 내)

바. 기타 사항

- 학사관리, 융합전공의 효과적 운영방안 등

③ 학과(전공) 간 역할분담 및 조정 방안

가. 융합전공 신설 이후 진행 사항 등

붙임 : 참여학과별 교수 회의록 (※ 신설계획서 제출 시 각 참여학과별 교수 회의록 첨부하여야 함)

대학원 융합전공 이수신청서

1. 학생 정보

소속 (대학원)	학과 전공	학번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기	
		성명	

2. 융합전공 신청 내역

융합전공명	이수유형
	(유형1 또는 유형2)

※ 대학원 융합전공 이수유형

- 유형1 : 원 소속을 유지하되, 융합전공만을 이수(학위기에 융합전공 이수 표기되며, 원 학과 학위 수여)
- 유형2 : 원 소속을 유지하고 원 소속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학위기에 원 소속 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가 동시에 표기되나, 원 학과 학위만 수여)

위와 같이 대학원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3. 동의

원 소속 전공주임교수	융합전공주임교수
(인)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대학원 융합전공 이수 포기원

1. 학생 정보

소속 (대학원)	학과 전공	학번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기	
		성명	

2. 융합전공 포기 내역

융합전공명	이수유형	융합전공 시작학기	포기 사유
	(유형1 또는 유형2)	2023년 1학기	

위와 같이 대학원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3. 동의

원 소속 전공주임교수	융합전공주임교수
(인)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대학원 융합전공 이수유형 변경 신청서

1. 학생 정보

소속 (대학원)	학과 전공	학번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기	
		성명	

2. 융합전공 이수유형 변경 신청내역

융합전공명	변경 전	변경 후
	(유형1 또는 유형2)	(유형1 또는 유형2)

위와 같이 대학원 융합전공의 이수유형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3. 동의

원 소속 전공주임교수	융합전공주임교수
(인)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